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2. 6. 21.

사회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: 2022년 6월 8일

나. 제출자: 영등포구청장

다. 회부일자: 2022년 6월 16일

라. 상정일자: 제237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

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(2022. 6. 20.) 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: 도시국장 김창환)

가. 제안이유

-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10조의4, 「지방자치단체 재난안전예산 사전검토 2023회계연도 운영지침」 등에 따라 재난안전예산 사전검토를 위한 재난안전예산조정위원회의 설치근거를 마련하고, 기타 조항의 표현을 정비하고 법령 및 현실에 맞게 수정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의 약칭 수정(안 제2조제3호)
- 재난안전예산조정위원회 설치 근거 조항 신설(안 제9조의2)
- 총괄조정관을 총괄지원관으로 명칭 변경(안 제18조제1항제3호, 제22조제2항)
-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을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 범위 한정(안 제23조)

- 재난관련 위험정보의 예시 변경 (안 제37조제4항제2호)
- 기타 용어 및 표현 정비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(전문위원: 이원배)

○ 본 조례안은

-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10조의4, 「지방자치단체 재난안전예산 사전검토 2023회계연도 운영지침」 등에 따라 재난안전예산 사전검토를 위한 재난안전예산조정 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,

○ 주요 내용은

- 안 제2조, 제18조, 제26조에서는 본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의 약칭이 “본부장”으로 표기되어 있는 것을 통합지원본부장과 구분될 수 있도록 “대책본부장”으로 변경하였고,
- 안 제9조2에서는 본 조례의 상위법인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10조의4가 개정(본조 신설 2020. 6. 9.)됨에 따라 지역 재난 취약분야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투자를 강화하기 위해 예산을 편성하기 전,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투자우선순위를 사전 조정하기 위한 “재난안전예산조정위원회”의 설치 근거 규정을 신설하였으며,
- 본 조례 제18조제1항제3호에서는 “총괄조정관은 안전교통국장이 되고, 대책본부의 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.”라고 규정하고 있고, 제2조제4호에서는 “대책본부의 본부장은 자연재난의 총괄·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.”라고 규정되어 있어 총괄조정업무를 대책본부장의 권한으로 판단하여 “총괄조정관”을 “총괄지원관”으로 변경하였으며,
- 본 조례 제2조제9호에서는 “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이라 함은 재난관리책임기관 중 영등포구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말한다.”로 규정되어 있어 지역적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“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”을 “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”으로 변경하였고,
- 안 제37조에서는 산이 없는 우리 구의 지역적 여건을 반영하여 재난관련 위험정보의

예시에서 “산불정보, 산사태 정보”를 “화재정보”로 변경하였음.

○ 본 조례안은

- 상위법인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이 개정됨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예산에 관한 투자우선 순위 등을 검토하기 위한 “재난안전예산조정위원회” 구성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,
- 이번 개정을 통해 재난 및 안전관리 취약분야에 대한 재정투자를 강화하고 투자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, 관계 법령의 범위에서 적정하게 규정되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.

4. 심사결과: 원안 가결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제 491 호
----------	---------

제출연월일: 2022. 6. .
제 출 자: 영등포구청장

1. 제안이유

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10조의4, 「지방자치단체 재난안전예산 사전검토 2023회계연도 운영지침」 등에 따라 재난안전예산 사전검토를 위한 재난안전예산조정위원회의 설치근거를 마련 하고, 기타 조항의 표현을 정비하고 법령 및 현실에 맞게 수정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의 약칭 개정(안 제2조제3호)
- 나. 재난안전예산조정위원회 설치 근거 조항 신설(안 제9조의2)
- 다. 총괄조정관을 총괄지원관으로 명칭 변경(안 제18조제1항제3호, 제22조제2항)
- 라.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을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 범위 한정(안 제23조)
- 마. 재난관련 위험정보의 예시 변경(안 제37조제4항제2호)
- 바. 기타 용어 및 표현 정비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: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
- 나. 예산조치: 해당 없음

다. 협의사항

1) 규제심사: 신설·강화되는 규제사무 없음

2) 부패영향평가·성별영향분석평가·인권영향평가: 해당없음

라. 입법예고(2022. 5. 12. ~ 6. 2./ 21일 간) 결과: 의견 없음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2조제2호를 삭제하고, 같은 조 제3호 중 “편성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”를 “편성하여”로, “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”을 “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(이하 “대책본부장”이라 한다)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“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16조제1항에 따른 대책본부의 본부장”을 “대책본부장”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1. 그 외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5조제5호 중 “위원장(이하 “위원장”이라 한다)”을 “위원장”으로 한다.

제8조제1항 중 “되며”를 “되고”로 한다.

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9조의2(재난안전예산조정위원회) ① 구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예산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위원회에 재난안전예산조정위원회(이하 “안전예산위원회”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

1. 안전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할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투자우선순위에 대한 사전 조정
2. 투자우선순위에 관한 관계부서 간 협조사항 처리 등

- ② 안전예산위원회의 위원장(이하 “안전예산위원장”이라 한다)은 부구청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안전교통국장이 된다.
- ③ 안전예산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위원은 구 소속 공무원 중 안전예산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.
- ④ 안전예산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, 간사는 도시안전과장이 된다.
- ⑤ 안전예산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11조제1항 중 “안전관리위원회와 실무위원회”를 “안전관리위원회, 실무위원회, 재난안전예산조정위원회”로 한다.

제1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“본부장”을 각각 “대책본부장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3호 중 “총괄조정관”을 “총괄지원관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4호 중 “본부장”을 “대책본부장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6호 중 “구 소속”을 “수습주무부서 및 유관부서의”로, “수행한다”를 “수행하고 실무반장은 해당부서의 장이 된다”로 한다.

제20조 중 “총괄조정관”을 “총괄지원관”으로 한다.

제22조제1항제2호 중 “관계기관”을 “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”으로 한다.

제22조제2항 중 “차장·총괄조정관·통제관”을 “차장·총괄지원관·통제관”으로 한다.

제23조의 제목 “(관계기관에 근무자 파견요청 등)”을 “(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에 근무자 파견요청 등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재난관리책임기관”을 “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“관계기관”을 “관계 지역재

난책임기관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관계기관”을 각각 “관계 지역재난관리 책임기관”으로 한다.

제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“재난관리책임기관”을 각각 “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”으로 한다.

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대책본부회의는”을 “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책본부회의(이하 “대책본부회의”라 한다)는 영 제21조의2에 따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소집한다”를 “소집하되 사전에 지정한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제20조의 순서에 의한다”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“대책본부회의 위원으로 임명된 사람”을 “대책본부회의의 위원”으로, “본부장”을 “대책본부장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5항 중 “발생한 재난을 관장하는 과장급 공무원”을 “담당관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6항을 삭제하며, 같은 조 제7항 중 “참석으로 개회하고”를 “출석과”로 한다.

② 대책본부회의의 의장은 대책본부장이 되고, 부의장은 차장이 되며,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.

1. 수습주무부서의 국·소장 및 과장
2. 유관부서의 국·소장 및 과장
3.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
제27조제4항 중 “재난관리책임기관”을 “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”으로 한다.

제28조제1항 중 “대책본부회의”를 “대책본부장은 대책본부회의”로, “실무회의(이하 “실무회의”라 한다)를 개최”를 “실무회의를 구성·운영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과장급”을 “담당관, 실무반장,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부서장”으로 한다.

제33조제4호 중 “발생시”를 “발생 시”로 한다.

제37조의 제목 “(재난 예보·경보의 발령 등)”을 “(재난 예보·경보의 실시 등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법 제38조 및 영 제46조”를 “법 제38조의2”로, “지역단위의 예보·경보를 발령”을 “재난에 관한 지역단위의 예보·경보 체계를 구축·운영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제2항”을 “제1항”으로, “발령하는 때에는 중앙대책본부장 및 서울특별시 대책본부장과 영 제3조의2 지역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”을 “실시한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,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, 서울특별시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법 제38조제3항”을 “법 제38조의2제2항”으로, “재난관리책임기관”을 “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”으로, “취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중앙대책본부장, 수습본부장, 대책본부장 등 관계기관의 장”을 “얻으면 즉시 행정안전부장관,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, 시장, 구청장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“산불정보, 산사태 정보”를 “화재정보”로 한다.

제41조제1항 중 “서울특별시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”을 “시장”으로 한다.

제45조제1항 중 “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”을 “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시달받”을 “통보받”으로, “제1항에 따라 제출받”을 “전항에 따라 제출받”으로, 같은 항 및 제3항 중 “재난관리책임기관”을 각각 “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(생 략)</p> <p>2. <u>“준비단계”란 재난 발생이 우려되거나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평상시 재난의 예방·대비 및 상황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단계를 말하며, 자연재난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단계를 말한다.</u>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<u>가. 상시대비단계 :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기상정보 중 호우·대설 예비 특보가 발표된 경우 또는 특별한 자연재난 발생의 징후는 없으나 자연재난이 발생하는 경우에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지속적인 상황관리가 필요한 경우</u>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<u>나. 사전대비단계 :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기상정보 중 태풍정보 또는 호우·대설 주의보가 발표되어 자연재난에 대한 대비체제의 가동이 필요한 경우</u></p>	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<u><삭 제></u></p>

3. “비상단계”란 재난의 발생 위험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거나, 재난이 발생하여 재난의 효과적인 대비·대응 및 복구(이하 “수습”이라 한다)를 위하여 실무반을 편성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는 단계를 말하며, 자연재난의 경우에는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기상정보 중 태풍주의보 또는 호우·대설경보가 발표되어 자연재난의 발생 위험이 상당한 수준에 이른 단계 또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이에 준한다고 인정하는 단계를 말한다.

4. “자연재난대책기간”이란 자연재난 중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시행령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1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규모 자연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. 다만,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

3. -----

----- 편성하여 -----

----- 법 제16조
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
(이하 “대책본부장”이라 한다)
-----.

4. -----

----- 대책본부장 -----

본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

제16조제1항에 따른 대책본부

의 본부장은 자연재난의 총괄

· 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.

가.·나. (생략)

5. ~ 10. (생략)

<신설>

제5조(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) 구청장은 구의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조정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안전관리위원회(이하 “안전관리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1. ~ 4. (생략)

5. 그 밖에 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장(이하 “위원장”이라 한다)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

제8조(안전관리위원회의 회의) ① 위원장은 의장이 되며,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

가.·나. (현행과 같음)

5. ~ 10. (현행과 같음)

11. 그 외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5조(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) -----

1. ~ 4. (현행과 같음)

5. -----
위원장-----

제8조(안전관리위원회의 회의) ① -----
되고-----

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구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②·③ (생략)

<신설>

-----.

②·③ (현행과 같음)

제9조의2(재난안전예산조정위원회)

① 구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예산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위원회에 재난안전예산조정위원회(이하 “안전예산위원회”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

1. 안전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할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투자우선순위에 대한 사전 조정
2. 투자우선순위에 관한 관계부서 간 협조사항 처리 등

② 안전예산위원회의 위원장(이하 “안전예산위원장”이라 한다)은 부구청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안전교통국장이 된다.

③ 안전예산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위원은 구 소속 공무원 중 안전예산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.

④ 안전예산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

제11조(조사·연구의 의뢰) ① 안전관리위원회와 실무위원회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면 해당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관계전문가나 관계기관·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.

② (생략)

제18조(대책본부 구성 등) ①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.

1. 본부장은 구청장이 되고, 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한다.
2. 차장은 부구청장이 되고, 본부장을 보좌한다.
3. 총괄조정관은 안전교통국장이 되고, 대책본부의 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.
4. 통제관은 재난의 종류에 따라 그 수습을 주관하는 국(소)의 장이 되고 본부장을 보좌

되, 간사는 도시안전과장이 된다.

⑤ 안전예산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11조(조사·연구의 의뢰) ① 안전관리위원회, 실무위원회, 재난안전예산조정위원회-----

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제18조(대책본부 구성 등) ① ---

-----.

1. 대책본부장-----
-----.
2. ----- 대책본부장-----.
3. 총괄지원관-----
-----.
4. -----

----- 대책본부장-----

하면서 재난 수습업무 전반을 통제한다.

4의2.·5. (생략)

6. 실무반은 구 소속 공무원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·유관기관 및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파견 받은 사람으로 편성하여 재난의 대응 및 수습업무를 수행한다.

② (생략)

제20조(직무대행) 대책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제18조제1항의 차장, 총괄조정관, 통제관, 지원협력관, 담당관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22조(상황판단회의) ① 대책본부장은 재난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상황판단을 위한 회의(이하 “상황판단회의”라 한다)를 개최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.

1. (생략)
2. 실무반 편성 및 관계기관 파견 범위
3. ~ 5. (생략)

-----.

4의2.·5. (현행과 같음)

6. ----- 수습주무부서 및 유관부서의 -----

수행하고 실무반장은 해당부서의 장이 된다.

② (현행과 같음)

제20조(직무대행) -----

--- 총괄지원관-----

-----.

제22조(상황판단회의) ① -----

-----.

1. (현행과 같음)
2. -----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-----
3. ~ 5. (현행과 같음)

② 상황판단회의는 대책본부장이 직접 개최하거나 차장·총괄조정관·통제관 및 담당관이 개최할 수 있다.

③ (생략)

제23조(관계기관에 근무자 파견요청 등) ① 대책본부장은 제18조 제2항에 따른 실무반을 편성할 때에는 기관별 역할과 기능을 고려하여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파견을 요청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파견할 직원의 성명·소속·연락처 등을 기재한 근무자 명단을 대책본부장에게 신속하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관계기관에서 파견된 사람은 대책본부 상황실에서 근무하며, 대책본부장의 지휘에 따라야 한다. 다만, 대책본부장은 재난상황에 따라 파견 근무인력 일부만 소집하고 나머지 인력은 관계기관에서 비상 대기하도록 할 수 있다.

② -----
----- 차장·총괄
지원관·통제관 -----
-----.

③ (현행과 같음)

제23조(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에 근무자 파견요청 등) ① -

----- 지역재난관리책임기
관-----
-----.

② -----
--- 관계 지역재난책임기관---

-----.

③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

----- 관
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-----
-----.

제24조(파견근무자의 사전교육 등) ① 대책본부장은 파견근무자가 재난상황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부터 파견자의 명단을 미리 제출받아 상황 근무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.

② 제23조제1항에 따라 파견요청을 받은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사전 교육 및 훈련을 받은 사람을 우선하여 파견하여야 한다.

③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을 이수한 파견근무 대상자의 명단과 비상연락체계를 작성·관리하여야 한다.

④ (생략)

제26조(대책본부회의의 구성·운영 등)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대책본부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확정한다.

1. ~ 5. (생략)

제24조(파견근무자의 사전교육 등) ① -----

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-----

-----.

② -----
-----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-----

-----.

③ --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--

-----.

④ (현행과 같음)

제26조(대책본부회의의 구성·운영 등) ① -----
--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책본부회의(이하 “대책본부회의”라 한다)는 영 제21조의2에 따라 ----.

1. ~ 5. (현행과 같음)

② 대책본부회의는 재난을 관장하는 주관부서의 국·소장 및 과장을 포함하여 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.

③ 대책본부회의는 대책본부장 또는 대책본부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소집한다.

④ 대책본부회의 위원으로 임명된 사람이 인사이동 등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⑤ 대책본부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, 간사는 발생한 재난을 관장하는 과장급 공무원으로 한다.

⑥ 대책본부장이 대책본부회의의 의장이 되며, 대책본부회의를 주관한다.

⑦ 대책본부회의는 위원의 과반

② 대책본부회의의 의장은 대책본부장이 되고, 부의장은 차장이 되며,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.

1. 수습주무부서의 국·소장 및 과장

2. 유관부서의 국·소장 및 과장

3.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
③ -----

--- 소집하되 사전에 지정한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제20조의 순서에 의한다.

④ 대책본부회의의 위원-----

----- 대책본부장-----.

⑤ -----

--- 담당관-----.

< 삭 제 >

⑦ -----

수의 참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27조(대책본부회의의 소집) ① ~ ③ (생략)

④ 대책본부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업무담당자와 그 밖의 외부 전문가를 대책본부회의에 참석시켜 자문을 구할 수 있다.

제28조(실무회의의 개최) ① 대책본부회의 안건의 사전 검토, 통합지원대책 및 실무반 운영 등 실무적인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대책본부에 실무회의(이하 “실무회의”라 한다)를 개최할 수 있다.

② 실무회의는 통제관,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과장급으로 구성할 수 있다.

③ (생략)

제33조(자문단의 기능)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.

- 1. ~ 3. (생략)
- 4. 전염병 등 재난 발생시 의료

출석과 -----

--.

제27조(대책본부회의의 소집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

④ -----
---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---

-----.

제28조(실무회의의 개최) ① 대책본부장은 대책본부회의-----

----- 실무회의를 구성·운영-----
-----.

② ----- 담당관, 실무반장,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부서장-----
-----.

③ (현행과 같음)

제33조(자문단의 기능) -----

-----.

- 1. ~ 3. (현행과 같음)
- 4. ----- 발생시 -----

에 관한 사항

5. ~ 8. (생략)

제37조(재난 예보·경보의 발령 등) ① 구청장은 법 제38조 및 영 제46조에 따라 지역단위의 예보·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.

② 재난의 위기경보는 법 34조의5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에 따라 관심·주의·경계·심각 등으로 단계를 구분하여 발령할 수 있다. 다만, 관계 법령에서 별도의 예보·경보의 발령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따른다.

③ 구청장이 제2항에 따른 예보·경보를 발령하는 때에는 중앙대책본부장 및 서울특별시 대책본부장과 영 제3조의2 지역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.

④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다음 각호의 재난관련 위험정보를 취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중앙대책본부장, 수습본부장, 대책본부

5. ~ 8. (현행과 같음)

제37조(재난 예보·경보의 실시 등) ① ----- 법 제38조의2----- 재난에 관한 지역단위의 예보·경보 체계를 구축·운영-----.

<삭제>

③ ----- 제1항----- 실시한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,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, 서울특별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 -----

④ 법 제38조의2제2항--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----- 얻으면 즉시 행정안전부장관,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, 시장, 구청

장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
하여야 한다.

- 1. (생략)
- 2. 기상상황, 홍수정보, 산불정보, 산사태 정보 등의 위험상황

3. 4. (생략)

제41조(재난상황의 보고 및 전파)

① 구청장은 그 관할 지역 및 업무에서 재난발생이 우려되거나 재난발생 시 이를 서울특별시 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② (생략)

제45조(안전관리계획의 수립) ①

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그 소관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구청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시달받은 시장의 안전관리 업무에 관한 계획의 수립지침과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안전관리 업무에 관한 계획을 종합하여 구의 안전관리계획을 작성하고 안전관

장-----
-----.

- 1. (현행과 같음)
- 2. ----- 화재정보

--

3. 4. (현행과 같음)

제41조(재난상황의 보고 및 전파)

① -----

----- 시장-----

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제45조(안전관리계획의 수립) ①

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-----

-----.

② -----
--- 통보받-----

전항에 따라 제출받-- 지역재
난관리책임기관-----

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.

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확정된 구의 안전관리계획을 시장에게 보고하고, 제1항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--.

③ -----

----- 지
역재난관리책임기관-----
-----.